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,293,008,437 | 38,790,253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| 1,152,063,941 | 34,561,918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| 140,944,496   | 4,228,335  |
|      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113,099,490   | 3,392,985  |
|     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53,717,325    | 1,611,520  |
|      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43,215,999    | 1,296,480  |
|      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16,166,166    | 484,985  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27,845,006    | 835,350    |
|      |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      | 1,817         | 55         |
|      |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| 3,139,847     | 94,195     |
|      |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3,230,256     | 96,908     |
|      |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| 10,800,489    | 324,015    |
|      |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10,672,597    | 320,178    |

제 2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20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8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.